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35호 2019. 5. 13.(월)

조 례

남해군 조례 2379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
 남해군 조례 2380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남해군 조례 238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6
 남해군 조례 2382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8
 남해군 조례 2383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10
 남해군 조례 2384호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14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3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17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18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고시 21
 남해군 고시 제2019 - 59호 도로명주소 고시25

공 고

제2019 - 635호 2019,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28
 제2019 - 65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32
 제2019 - 664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제2019 - 672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79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을 “남해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그 밖의” 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을 “위·수탁 계약을”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0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 100분의 50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 을 “등록기준지”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부” 를 “공적 장부”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요금계기” 를 “요금 계기(計器)”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2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남해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남해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2018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남해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3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공공보건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 ②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진료행위 마다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
- ④ “본인부담금”이란 공공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공공보건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제4조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불소 도포, 골다공증검사 등)의 수가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2. 예방접종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주사료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징수한다.
3.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구입하는 약품의 단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제2호의 예방접종 수수료와 구입약품 단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군수는 진료수가 이외의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같이 징수한다.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7조(본인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료시점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9. 그 밖에 무의탁자 진료, 각종 행사 및 해수욕장 의료지원 시 진료, 방문사업 진료 등

제8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및 시험·검사 등
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실 증빙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징수 및 납부) 군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그 날에 징수하며, 납부의무자는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납해화폐(화전)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진료비의 환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보건소 수가조례 및 남해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비급여 진료수가(제4조1호 관련)

항 목	단 위	진료수가
불소도포	전악	3,300원
골다공증 검사	1회	8,000원

남해군 조례 제2384호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남해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3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재무감사에 한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12월 말”을 “12월 31일”로, “1월 말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관 편성 등)”을 “(감사반 편성 등)”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서류·장표”를 “관계서류·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감기관”을 각각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감사관의 유의사항)”을 “(감사반의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실은”을 “사실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은”을 “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수감기관”을 각각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 을 “(재심의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를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을 제기” 를 “재심의를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이의신청” 을 각각 “재심의신청”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30일” 을 “2개월” 로 한다.

제17조 중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감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18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성에 따라 공간시설(녹지)의 재해방지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22) 제 635 호

2019년 5월 1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30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녹지)
- 명 칭 :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해예방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시설종류	위치	사업면적	비고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해예방공사	공간시설 (녹지)	남해군 남면 덕월리 307-1번지 일원	2,8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아난티 대표이사 이만규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0.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7. 실시계획 인가 승인 조건 : 붙임2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위치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남해군 남 면 덕월리	307-1	임	2,734	1,11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주식회사 아난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기업금융3실)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파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642(석전동) (서울지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공항금융센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307-3	임	265	15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주식회사 아난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기업금융3실)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파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642(석전동) (서울지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공항금융센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307-5	임	1,435	28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주식회사 아난티				
	307-10	임	519	1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주식회사 아난티				
	308-5	잡	1,499	47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주식회사 아난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기업금융3실)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파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642(석전동) (서울지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공항금융센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산5-2	임	1,173	82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주식회사 아난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기업금융3실)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파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642(석전동) (서울지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공항금융센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합계	6필지		7,625	2,866						

[붙임2]

실시계획 인가 승인 조건

1. 일반조건

- 1)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복구예치금(57,296,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신고 기간에 6개월 가산)으로 사전예치하고 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공사안내 입간판을 설치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 2) 허가받은 기간(2020.11.30.)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신고기간 만료 10일 이전 까지 복구설계서 및 소나무 방제처리 완료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9-5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688 외 3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68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84-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45-1, 580-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4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45-1, 57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4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45-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4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45-1, 580-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4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7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735, 73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102	20090702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당항리 207-1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동부대로 2829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9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풀길리 565-65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983-6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843-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243-3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5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1193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264-7, 1264-12, 1264-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616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봉화리 1337-2, 산376-7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암로 205	20090427	내선은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치한 선생이 홍상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암로라 함
1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772-4, 772-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321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금양교에서 두모로 연결되는 도로임
1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002-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108-10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일구에 탐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1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686-1, 708, 708-1, 70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38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일구에 탐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17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대벽리 235-4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461-10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1176-1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408번길 49-41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상천리 76-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68-9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리리 18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100번길 30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703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1176번길 72-19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825-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474번길 1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12-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260번길 45-106	20090427	정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81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장남로72번길 77	20090427	장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306-20	도로명 주소	20190425	건축물대장 주소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
2	경상남도 남해군 여동면 무림로 38	도로명 주소	20190412	복수주소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3	경상남도 남해군 여동면 성남로 93	도로명 주소	20190417	현장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결실
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1-4	도로명 주소	20190405	현장조사 결과 건물 결실
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22	도로명 주소	20190411	현장조사에 의한 건물 결실 확인
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밀야로525번길 25	도로명 주소	20190423	건물 멸실에 의한 건물번호폐지
7	경상남도 남해군 여동면 초용로119번길 5-15	도로명 주소	20190419	도로명주소 중복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635호

2019,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제7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남 해 군 수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 양식어업 】

○ 재 개 발

시 군	어업종류	양식종류	양식물	어장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도면번호
소계				25건	126.5		
남해군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3.0	승 인	6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4.0	승 인	7
“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남해 선소	8.0	승 인	8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4.0	승 인	9
“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설천 진목	3.0	승 인	10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	승 인	11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	승 인	12

【 양식어업 】

○ 재 개 발

시 군	어업명칭	양식종류	양식물	어장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도면번호
남해군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4.0	승 인	13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광천	3.0	승 인	14
“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신흥	10.0	승 인	15
“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지족	3.0	승 인	16
“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단항	10.0	승 인	17
“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창선 단항	10.0	승 인	18
“	패류양식	수하식	가리비	창선 장포	3.0	승 인	19
“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삼동 영지	5.0	승 인	20

남 해 군 공 보

(30) 제 635 호

2019년 5월 13일

시 군	어업명칭	양식종류	양식물	어장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도면 번호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	승 인	21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	승 인	22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	승 인	23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	승 인	24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	승 인	25
“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	승 인	26
“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5.0	승 인	27
“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남면 선구	3.5	승 인	28
“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서대	5.0	승 인	29
“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 화계	5.0	승 인	30

【 마을어업 】

○ 재 개 발

시 군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도면 번호
소계				6건	655.9		
남해군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 신흥	97.0	승 인	31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 사포	76.3	승 인	32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 광천	32.8	승 인	33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설천 문항	166.0	승 인	34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삼동 영지	187.8	승 인	35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고현 이어	96.0	승 인	36

【 정 치 망 】

○ 재 개 발

시 군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도면번호
소계				10건	183.4798		
남해군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상주 소량	28.81	승 인	37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남면 석교	17.67	승 인	38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상주 두모	5.0	승 인	39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노구	25.2198	승 인	40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노구	11.47	승 인	41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삼동 물건	20.77	승 인	42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상주 금포	12.09	승 인	43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상주 벽련	17.05	승 인	44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미조 송정	29.9	승 인	45
“	정치망	정치망	멸치 등	이동 신전	15.5	승 인	46

【 양식어업 】

○ 대체개발

시 군	어업명칭	양식종류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도면번호
				1건	20		
남해군	어류등 양식	가두리	어류	미조 미조	2.0	조건부 승인 (타어업·인근 어장과의 분쟁 해소 및 대체개발 수면 저질(퇴적물)환경 개선 후 처분	5

남해군 공고 제2019-65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지역활 성과장)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 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은점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걸닐 776 외 1필지		
	면적	14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5. 8. ~ 2019. 5. 30.		
	목적 및 사유	안전난간설치 및 잔디식재		

남해군 공고 제2019-664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개선하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을 추가로 정의 (제2조)
 - 나. 상위법령에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제13조)
 - 1) 사용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
 - 남해군 체육회 가맹단체 주관 행사 추가
 - 2) 사용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
 - 체로페이 결제 방식 추가
 - 다. 사용료의 조정 등 (별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5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체육시설사업소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62, 팩스 055-860-3749, e-mail : lyuoh@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전화 055-860-8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및”을 “관리와”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도관”을 “무도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남해군체육회”를 “남해군체육회 및 가맹단체”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로페이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평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남해읍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0,000		
		조 명	"	90,000	90,000		
		트 랙		무료	무료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220,000	270,000		
	인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50,000	70,000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2시간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2시간	150,000	200,000		
		냉·난방시설	"	30,000	30,000		
	복 심 장	-	무료	무료			
	스포츠댄스장	-	무료	무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0,000		
		조 명	"	80,000	80,000		
	바다,나비, 치자,비자 (천연잔디)	필드	"	220,000	270,000		
		조 명	"	30,000	30,000		
	나비,비자 (인조잔디)	필드	"	50,000	70,000		
		조 명	"	20,000	20,000		
	야구장	인조구장	"	130,000	160,000		
		조 명	"	110,000	110,000		
	풋살 경기장	필드	-	무료	무료		
테니스장	코트	-	무료	무료			
족구장	군일원	구장	-	무료	무료		
		조명시설	-	무료	무료		
공설 테니스장	남해읍	회 원	월 사용료	10,000	10,000		
		비회원	일 사용료	5,000	5,000		
			월 사용료	20,000	20,000		
생활체육관 (탁구장)	남해읍	회 원	월 사용료	20,000	20,000		
		비회원	일 사용료	4,000	4,000		
			월 사용료	40,000	40,000		
생활체육관 (사격장)	남해읍	회원	월 사용료	10,000	10,000		
게이트볼장	읍면	-	-	무료	무료		
그라운드 골프장	읍면	-	-	무료	무료		
금해정	궁도장	회원	월 사용료	30,000	30,000		
무도관	검도관	회원	월 사용료	50,000	50,000		
	유도관	일반	월 사용료	50,000	50,000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2. 야외공연장 사용료

시설물별	기 준	요금(평일)	비 고
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	1일 1회 (4시간 기준)	100,000원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u>관리 및</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관리와</u> ----- --- <u>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 면 공설운동장(체육공원), 실내체육관(족구장 포함),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공설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u>무도관</u> 등을 말한다.</p> <p>2. ~ 11.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u>무도관, 그라운드골프장</u> ----- -----.</p> <p>2. ~ 11.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u>남해군체육회</u>가 주관하는 행사</p> <p>2. ~ 5. (생략)</p> <p>③ (생략)</p> <p><신설></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남해군체육회 및 가맹단체</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로페이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u></p>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참고]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평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남해읍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트랙	"	무료	무료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220,000	275,000
	인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77,000	110,000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3시간	110,000	165,000
		체육이외	1회/3시간	220,000	330,000
		냉·난방시설	"	110,000	110,000
		복싱장	-	무료	무료
		스포츠댄스장	-	무료	무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야간조명	"	110,000	110,000
	보조구장 (천연잔디)	필드	"	220,000	275,000
	인조잔디 구장	필드	"	77,000	110,000
		야간조명	"	33,000	33,000
	야구장	인조구장	"	132,000	165,000
		야간조명	"	110,000	110,000
	풋살 경기장	필드	"	22,000	33,000
테니스장	코트	1회 3시간/1면	11,000	16,500	
족구장	군일원	구장	1회/3시간	10,000	15,000
		조명시설	1회/3시간	5,000	5,000
공설 테니스장	남해읍	코트	1회 3시간/면	11,000	16,500
생활체육관 (탁구장)	개인	개인	1회/3시간	2,000	3,000
	월회원	개인	1회/3시간	30,000	30,000
		단체	1회/3시간	20,000	20,000
생활체육관 (사격장)			1회/1시간	10,000	15,000
게이트볼장	읍면	-	-	무료	무료
금해정	궁도장	사대	1일 1회	20,000	25,000
무도관	검도관		1회/3시간	30,000	40,000
	유도관		1회/3시간	30,000	40,000

남해군 공고 제2019-672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불법 촬영, 성범죄 등이 잇따르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5조(설치기준)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 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5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7,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전화 055-860-3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를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 별표” 를 “영 제6조에 따른” 으
로 한다.

별표 중 “법 제21조제1항” 을 각각 “법 제21조제2항” 으로 하고, “법 제21조제
2항” 을 “법 제21조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u>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유료화장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u>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u>----- -----.</p>
<p>제3조(적용범위) ①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u>관광진흥법</u>」 제2조 · 제6호 · 제7호 ·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u>관광진흥법</u>」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u>관광진흥법</u>」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③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 ----- ----- ----- -----.</p> <p>② ----- 「<u>관광진흥법</u>」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치기준)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p>	<p>제5조(설치기준) ----- ----- 제6조제3항에 따른 -----</p>

<p>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6. <신 설></p>	<p>-----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u></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u>법 제10조제2항</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u>별표</u>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3.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 <u>영 제6조에 따른</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